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지 방 의 회 의 원 행 동 강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법률 제18191호, 2021. 5. 18. 공포, 2022. 5. 19.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 따른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3제3호 중 “산하기관”을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u> <u>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전심의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전심의등을 회피할 수 있다.</u> <u>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u> <u>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u> <u>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u> <u>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u>	<u><삭 제></u>

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
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
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
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
·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
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
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의장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
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
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
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
련자인 경우

②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
피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
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전심의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

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회피 및 제2항에 따른 의결에
관한 현황을 기록·관리해야 한
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
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
은 의장이 정한다.

제4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
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
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
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
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
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
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
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
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
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삭 제>

1.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
관·관리해야 한다.

제4조의3(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
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
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
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그
지방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
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그
지방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
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

<삭 제>

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하
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
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
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소속 지방의회,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집행기관 및 그 지방자
치단체의 산하기관(「공직자윤
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
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
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서는 안 된다.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
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
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

<삭 제>

<삭 제>

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2. (생략)

3.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삭 제>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

1.·2. (현행과 같음)

3. -----
-----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

4. (생략)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략)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u>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u>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④ ~ ⑧ (생략)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u>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u> -- 4. (현행과 같음)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u> <u>다. 이하 같다)-----</u> ---. ----- -----. ④ ~ ⑧ (현행과 같음) <u><삭 제></u>
--	--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

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전심의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연 락 처	(044) 200 - 7675